### [서식 예]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# 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

피 고 △△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#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 ○ . .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10,000,000원, 등록면허세 15,000,000원, 교육세 3,000,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

원고는 2000. O. O. OO시 OO동 OO 대지 626㎡중 530㎡, 건물 4,376㎡중 2,500㎡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던 바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금1,000만원, 등록면 허세 금1,500만원, 교육세 금300만원의 각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.

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임대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았던 바, 20 ○ ○. ○.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항고하던 중인 20 ○ ○. ○. 경부터 ○ ○도의 해당공무원에게 경락허가결정을 가지고 가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.

정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지 않아 원고는 경락대금완납증명을 받은 후인 같은 해 8. 3.에야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.

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교육세를 감면 처리하여 부과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므로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, 등록면허세,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.

#### 2. 전심절차

이에 원고는 같은 해 5. 6.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○○남도 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○○도지사는 같은 해 6. 5.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, 원고가 같은 해 9. 7.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. 6.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

(원고는 위 결정통지를 같은 해 11. 8. 송달받았음)

#### 3. 피고처분의 위법성

- 가. 원고는 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정신청을 늦게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(즉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)에 이미 ○
  ○도청의 해당 공무원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승인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전에 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.
- 나.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"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"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정받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.

그러나 위 법에 규정한 "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"의 문구를 집적시설지 정승인을 부동산 취득일 전에 받아야만 한다고 축소해석할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목적부동산의 취득전·후에 받은 사 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거나 면제받지 못하게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라 하겠습니다.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집적시설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.

### 4. 결론

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**.** 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워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를 제기합니다.

# 입 증 방 법

결정통지 및 결정서 1. 갑제1호증

1. 갑제2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 및 결정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# ○○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